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2005년 2월 2 일

· 회부일자 : 2005년 2월 2 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236회 임시회

·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5. 2. 17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우병수)

가. 제안이유

○ 조례명을 변경하여 특별회계로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, 특별회계 와 기금운용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및 기 지원된 용자금의 융자조건 완화를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을 “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”로 개정

○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의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

- 용자 한도액 상향조정 : “3,000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, “1억원”을 “2억원”으로 (안 제7조)
- 용자상환기간의 선택적 운영 :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(안 제8조)
- ‘03년 1월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율 감면 : “3%”→“2%” (안 부칙 제2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이 상 업)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하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을 농·어업인 시설자금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생산자 단체와 법인체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농·어업인,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의 운용자금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대책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각종 원자재비용의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,

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개정부분에서 상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유라고 판단되나

-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로 ‘03년 1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및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의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안

의 안 번 호	285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년 2월 2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이유

- 조례명을 변경하여 특별회계로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,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 및 기 지원된 융자금의 융자조건 완화를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 변경 :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→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- 나.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의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
- 다. 융자 한도액 상향조정 : “3,000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, “1억원”을 “2억원”으로
- 라. 융자상환기간의 선택적 운영 :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
- 마. ‘03년 1월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율 감면 : “3%”→“2%”(부칙제2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·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(이하 “기금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농어업인”이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2호 및 「수산업법」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.
2. “생산자단체”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.
3. “법인체”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
4. “지역명품”이라 함은 다음의 품목을 말한다.
 - 가. 1지역1명품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품목
 - 나.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지역 농특산물

제3조(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제5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사항
3. 기타 기금특별회계운용에 관한 사항

제4조(운용계획) ①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특별회계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
2.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계획
3.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사업지원)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농·어업인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
2.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
3. 농어촌소득 증대 및 농·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사업
4.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
5. 농·어업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
6.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 제3항중 “개발기금을”을 “사업비를”로 한다.

제7조(사업비 지원) ① 제5조 소정의 사업비는 응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응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며,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2억원 이내로 한다.

2. 운용자금은 농어업인,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3천만원으로 한다.

다만,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및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는 5억원 이내로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) ① 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한다.

다만, 시설자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한다

② 융자금의 이자는 연 2%로 하되, 상환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한다.

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다.

제9조 제2항 중 “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”를 “충청북도농어촌 개발기금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, 동조 제3항 중 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, 동조 중 “기금”을 “기금특별회계”로 한다.

제14조 내지 제15조를 각각 제12조 내지 제13조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2003년 1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는 연 2%로 하며,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②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(2003.1.3 조례 제2730호)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폐지된 충청북도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 이미 융자된 지원금은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한 기금(이하 “개발기금”이라 한다)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u>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(이하 “기금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<u>용어의 정의</u>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“농촌지도자”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을 지키면서 소득개발을 위한 능력이 있는 자로 4H회원, 농업(어업, 임업포함)인 후계자, 농촌지도자, 새마을지도자와 기타 영농에 성실히 앞장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개발기금”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안정 및 농어촌소득개발에 투자되는 기금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	<p>제2조(<u>정의</u>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“농어업인”이라 함은 「농업농촌기본법」 제3조제2호 및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.</p> <p>2. “생산자단체”라 함은 「농업농촌기본법」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.</p> <p>3. “법인체”라 함은 「농업농촌기본법」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</p> <p>4. “지역명품”이라 함은 다음의 품목을 말한다.</p> <p>가. 1지역1명품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품목</p> <p>나. 시장·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지역 농특산물</p>
<p>(신설)</p>	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개발기금 운용과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(생략)</p> <p>③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<u>1. 개발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개발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기타 개발기금운용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3조(심의위원회등의 구성) ①기금특별회계 -----</p> <p>-----기금특별회계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-----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</p> <p><u>1. 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제5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기타 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4조(운용계획) ①개발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<u>1. 개발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</u></p> <p><u>2. 해당연도 개발기금 사용계획</u></p> <p><u>3. 개발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기타 개발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p> <p>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4조(운용계획의 수립) ①기금특별회계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----- 기금특별회계 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1. 기금특별회계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</u></p> <p><u>2. 당해연도 사업비 사용계획</u></p> <p><u>3.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기타 기금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</p> <p>③ (삭 제)</p>
<p>제5조(대상사업) 개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<u>1. 농어촌지도자육성을 위한 소득개발사업</u></p> <p><u>2.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</u></p> <p><u>3. 농어촌소득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사업</u></p> <p><u>4. 1지역1명품 육성사업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신설)</p>	<p>제5조(사업지원) 농어촌소득개발을 위하여 도지사는 다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1. 농어업인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</u></p> <p><u>2.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</u></p> <p><u>3. 농어촌소득증대 및 농수산물 유통안정을 위한사업</u></p> <p><u>4.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</u></p> <p><u>5. 농어업 생산 및 가공 기술 연구 개발사업</u></p> <p><u>6. 기타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대상사업자 선정) ①~②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시군별로 지원품목과 개발기금을 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규칙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대상사업자 선정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_____ 사업비를 _____.</p>
<p>제7조(사업비 지원)</p> <p>① <u>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읍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읍자금의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설자금은 <u>농어민은 3,000만원</u> 이내로 하며, <u>작목반 등 농어민조직은 1억원</u> 이내로 한다. 2. 운용자금은 <u>농어민, 작목반 등 농어민조직은 2,000만원</u> 이내로 한다. <p>다만, 농수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매입 가공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<u>3억원</u> 이내로 할 수 있다.</p> <p>③(생 략)</p>	<p>제7조(사업비 지원)</p> <p>① <u>제5조 소정의 사업비는 읍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 <p>②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_____ 농어업인은 5천만원 _____ 생산자단체와 법인체는 2억원 _____. 2. _____ 농어업인, 생산자단체 및 법인체는 3천만원 _____. <p>다만, _____ 매입 및 가공 _____ 5억원 _____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) ①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. <u>(단서신설)</u></p> <p>②융자금의 이자는 연 2%로 하되, 상환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<u>기금취급 금융기관</u>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.</p> <p>③(생 략)</p>	<p>제8조(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) ①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. <u>다만, 시설자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한다.</u></p> <p>② _____ 기금특별회계 취급약정 _____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융자금의 회수) ①(생 략)</p> <p>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읍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<u>충청북도농어촌 개발기금유용관리특별회계</u>에 반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 략)</p>	<p>제9조(융자금의 회수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 충청북도 농어촌 개발기금 특별회계에 _____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0조(특별회계의 설치)</u> ① <u>개발기금운용에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(이하“특별회계”라 한다.)를 설치한다.</u> <u>②특별회계 업무는 농정국에서 관장한다.</u>	<u>제10조(삭제)</u>
<u>제11조(세입·세출)</u> ① ~ ②(<u>생략</u>) <u>③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. 이 경우 분임정수관은 기금주무과장, 수입금출납원은 기금주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u>	<u>제10조(세입·세출)</u> ① ~ ②(<u>현행과 같음</u>) <u>③-----</u> <u>-----. (이하 단서삭제)</u>
<u>제12조(결산 및 보고)</u> ① <u>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개발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.</u> <u>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	<u>제12조(삭제)</u>
<u>제13조(감독)</u> 도지사는 <u>기금</u> 의 용자를 받은 시·군에 대하여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지도 감독은 물론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	<u>제11조(감독)</u> ----- <u>기금특별회계의 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
<u>제14조(생략)</u>	<u>제12조(현행과 같음)</u>
<u>제15조(생략)</u>	<u>제13조(현행과 같음)</u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회계의 구분)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5조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5조(회계의 구분)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제38조(세입·세출결산이 제출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